

韩国设计保护法新旧对比 ( 2024.2.6 修订版与 2025.1.21 修订版 )

디자인보호법	디자인보호법
[시행 2024. 8. 7] [법률 제 20200 호, 2024. 2. 6, 타법개정]	[시행 2025. 7. 22] [법률 제 20692 호, 2025. 1. 21, 일부개정]
<b>제 115 조(손해액의 추정 등) ① ~ ⑥ (생략)</b>	<b>제 115 조(손해액의 추정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</b>
⑦ 법원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 1 항부터 제 6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<b>3 배</b> 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.	⑦ 법원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 1 항부터 제 6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<b>5 배</b> 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.
⑧ (생략)	⑧ (현행과 같음)

韩国设计保护法新旧对比 ( 2025.1.21 修订版与 2025.5.27 修订版 )

디자인보호법	디자인보호법
[시행 2025. 7. 22] [법률 제 20692 호, 2025. 1. 21, 일부개정]	[시행 2025. 11. 28] [법률 제 20962 호, 2025. 5. 27, 일부개정]
<b>제 37 조(디자인등록출원) ① (생략)</b>	<b>제 37 조(디자인등록출원) ① (현행과 같음)</b>
② 제 1 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.	② 제 1 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<b>2.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</b>	<b>2. 디자인의 설명</b>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생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<b>제 62 조(디자인등록거절결정) ① ~ ④ (생략)</b>	<b>제 62 조(디자인등록거절결정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b>

<p>⑥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.</p>	<p>⑤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제 33 조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제 46 조제 1 항 · 제 2 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.</p>
<p>&lt;신 설&gt;</p>	<p>⑥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 1 항부터 제 5 항까지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.</p>
<p><b>제 68 조(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) ①</b> 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 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 68 조(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) ①</b> 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 개월이 되는 날까지 또는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 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부터 1 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.</p>
<p>1. ~ 3. (생략)</p>	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 89 조(디자인등록증의 발급) ①·② (생략)	제 89 조(디자인등록증의 발급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<신설>	③ 특허청장은 제 96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디자인권이 이전등록된 경우 새로운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<신설>	<p><b>제 96 조의 2(디자인권의 이전청구) ①</b> 디자인등록이 제 121 조제 1 항제 1 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법원에 디자인등록의 이전(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그 지분의 이전을 말한다)을 청구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 1 항의 청구에 기초하여 디자인권이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는 그 디자인권이 설정 등록된 날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해당 디자인권</li> <li>2. 제 53 조제 2 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</li> </ol> <p>③ 제 1 항의 청구에 따라 공유인 디자인권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 96 조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.</p>

<신 설>

제 100 조의 2(디자인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 96 조의 2제 2 항에 따른 디자인권의 이전등록이 있기 전에 해당 디자인등록이 제 121 조제 1 항제 1 호 본문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해당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.

1. 이전등록된 디자인등록의 원(原)디자인권자

2. 이전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하여 이전등록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자. 다만, 제 104 조제 2 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.

② 제 1 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이전등록된 디자인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.

<p><b>제 121 조(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) ① 이해관계인</b>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 41 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 121 조(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) ① 이해관계인(제 1 호 본문의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)</b>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 41 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.</p>
<p>1. 제 3 조제 1 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<b>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&lt;단서 신설&gt;</b></p>	<p>1. 제 3 조제 1 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<b>제 39 조를 위반한 경우. 다만, 제 96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는 제외한다.</b></p>
<p><b>2. 제 27 조, 제 33 조부터 제 35 조까지, 제 39 조 및 제 46 조제 1 항·제 2 항에 위반된 경우</b></p>	<p><b>2. 제 3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거나 제 27 조, 제 33 조부터 제 35 조까지 및 제 46 조제 1 항·제 2 항에 위반된 경우</b></p>
<p>3.4. (생략)</p>	<p>3.4. (현행과 같음)</p>
<p>② ~ ④ (생략)</p>	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 181 조(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) ①·② (생략)</b></p>	<p><b>제 181 조(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b></p>
<p>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<b>제 37 조 제 2 항제 2 호 중 창작내용의 요점 및 같은 조 제 3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/b></p>	<p>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<b>제 37 조 제 3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/b></p>